

아리셀 참사 1심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담다

권미정 회원, 아리셀 대책위

2024년 6월 24일. 폭발음, 공단을 뒤덮는 연기와 불길, 불안한 공기를 품고 23명의 죽음은 뉴스를 통해 퍼졌다. 사고 당일 저녁에 사고 현장 근처에 모인 단위들로부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이 시작되었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회사와 집단적 교섭을 하려고 했으나 아리셀 사측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사업주 사전구속영장 발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그의 아들이자 총괄본부장인 박중언에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투쟁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그들은 피해가족들에게 사과·예의를 보이는 대신, 차별을 담은 합의금과 회사 측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보였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매일 추모문화제를 하고, 아리셀·에스코넥·삼성·노동부·국방부·용산 대통령실·대표이사 집·관련 공장 등을 돌며 투쟁했다.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 구속을 요구하며 법원과 지검 앞 농성을 통해 2024년 9월 24일,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재판은 2024년 10월 21일 준비공판을 시작하여 2025년 9월 23일까지 24번의 본공판을 진행했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모든 재판을 참석했고,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은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알아야 할 의무,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아리셀은 이번 사고는 예견 불가능한 것이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없다며, “몰랐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폭발은 예견할 수 있었고, 리튬 1차전지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리셀 같은 생산제조업체라 했다. 위험요소를 찾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생산제조업체의 자격이라는 말이었다.

자격 있는 실질적인 권한자가 누군지 밝히는 건 그래서 중요했다. 박순관은 총괄본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신은 직책만 있다고 했지만, 메일로 주간보고를 받고 자금조달·지출결정·인사배치 등에 개입하고 있었다.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박순관이 경영책임자라는 이번 판결은 조직·재정·인사 등에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회사는 예견된 폭발에 주의의무를 안 했고 ▲업체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안 했고 ▲소방계획과 훈련·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고 ▲비상구 대피는 어렵게 해놓는 등 위법 행위들과 함께 ▲불법과건을 활용한 후 ▲유족의 생계를 무기로 합의를 받아낸 잘못을 지적했다. 또한 그간 재판이 ▲산재사망사고를 가볍게 처벌해서 ▲예방효과가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밝혔다.

불법이 만든 안전 구멍, 유족들의 작은 비상구

아리셀의 모든 행위는 위험을 키우는 것이었다. 리튬 1차전지의 위험성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없었고, 열감지기 없이 손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폭발이 있었던 생산품을 추가검사나 생산중단 없이 사용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 위험의 구멍을 더 키운 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과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정보나 기본안전교육·훈련도 없이 노동자들을 투입한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여러 위험요소들이 이미 안전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불법적 고용과 법 위반 행위로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고용과 안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아리셀 판결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아리셀은 30층 건물에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어느 층인가) 있다고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리튬을 취급하는 1층에 비상구가 있으니 2층에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판결문에는 아리셀의 ‘30층 건물’ 주장에 대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 있으면 그 건물 전체에 비상구가 있는 게

당연하며 안전보건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아리셀의 비상구 논리는 어디로든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노동자 안전은 도외시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합의하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없애지 않으면 산재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유족의 권리가 인정된 작은 비상구다.

이어갈 판결 근거와 아쉬운 판결 근거

고용구조와 안전의 연계, 책임자에 대한 기준, 유가족의 상황을 악용하여 합의를 만들고 감형요소로 활용하는 중대재해 재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결정은 앞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재검토되길 바라는 점도 있다.

산재사망사고로 사업주에게 가장 높은 형량의 판결이지만 23명의 목숨을 생각하면 양형이 더 무거웠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위험물질·위험작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리튬’은 위험물질로 명시되어 있지만, ‘리튬 1차전지’는 위험물질로 명시되지 않아 특별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말한 안전보건규칙에도, 명시된 물질(리튬)정도의 발화성·인화성이 있거나 그런 물질(리튬)을 함유한 물질도 위험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해석을 더 넓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전보건규칙만을 기준으로 삼는 협소함을 넘고, 위험하다고 명시된 것만 위험물질로 인정하는 것도 넘어서야 예방이 가능해진다.

여전히 가벼운 목숨 취급당하는 현실을 바꾸자

지난 6월 사측과 합의하지 않은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와 함께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려 안전할 수 없는 이들, 죽음에서조차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속해서 대응해야 할 일로 남았다. 그 무엇보다 유가족들은 아리셀로부터 사과 받지 못했고, 아리셀에 근무하던 직원 중 트라우마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아리셀 판결에 대해 사업주 패가망신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치부하는 발언을 했다. 또 아리셀 판결 이후 엠텍 공장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이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어 1심 형량을 감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름만 다른 ‘아리셀’이 또 출현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이어갈 필요성과 이유는 너무 많다. 투쟁은 방식을 달리한 채 계속될 것이다. 